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5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주주가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3

I. 개요

1.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5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0. 21.

(3) 회 부 일 : 2025. 10.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이 경우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논란이 있음. 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 하여 사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양도소득으로 보기도 함(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판례상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래형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조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의제 배당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로 얻은 이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매도인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호 단서).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주주가 얻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오기형의원안)

현 행	오기형의원안
☐ 배당소득(제17조) ○ 의제배당의 범위(제1항제1호) - 다음의 가액(價額)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②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 양도소득(제94조) ○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신 설>	☐ 의제배당 범위에 자기주식 취득 댓가 포함 ○ 의제배당의 범위 - (현행과 같음)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u>자기주식의 취득(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으로</u>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② (현행과 같음) ☐ 자기주식은 거래소 거래 시에만 양도소득 적용 ○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u>단, 주식등의 양도가 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 취득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u>

* 오기형의원안 2025. 10. 21. 발의(의안번호 13652)

☐ 개정안은 개인이 주식을 당해 주권발행법인에게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임.

참고로, 동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및 매각에 따른 이익을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의제배당 및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¹⁾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현행법 제17조제2항제1호²⁾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혹은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94조제1항제3호³⁾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금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1)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2)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주가 취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그 외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한편, 양도소득의 경우 별도의 세율로 분류과세되고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 시에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등 과세범위, 과세시기, 세율 등의 차이가 존재함.

□ 개정안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주식을 당해 주권발행법인에게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현행법상⁴⁾ 회사가 자기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금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그 주주가 취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보유한 후 소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각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주주의 소득이 양도 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법원은 의제배당으로 본 사례와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임⁵⁾.

판례는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임⁶⁾.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로 누진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에 비하여 응능부담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세제인 점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현행 상

5) 조심 2012중3513, 2012.11.26., 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대법원 2008두19628, 2010.10.28., 대법원 2012두14507, 2012.10.11., 대법원 2012두27091, 2013.5.9., 대법원 2013두1843, 2013.5.24.)
삼일인포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2024.3. 782p.

6)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법의 관점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서 소각,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이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근거는 ‘유상감자’와 같이 자기주식의 취득이 회사가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주주가 납입한 자본을 다시 돌려주는 ‘자본환급’ 성격이 있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 상법⁷⁾은 다양한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기주식의 처분 또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지 않고 있어 상법상으로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자본의 환급 및 자본의 납입’, 즉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

7)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거래'로 보는 측면이 있음.

회사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시세차익을 고려하여 자기주식을 원하는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결과 현금의 유입이 발생하므로 '자산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통제가능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다는 관점임⁸⁾.

이러한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매를 일률적으로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려는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현행 상법의 관점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8) 임한솔,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2023.10.